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3 선고 2017가단108095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

피고 1. A 주식회사

2. B

3. C

변론 종결 2018. 4. 19.

판결 선고 2018. 5. 3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,532,211원과 그중 43,225,324원에 대하여 1999. 8. 23.부터 2008. 4. 8.까지는 연 19%의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2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투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가. 피고 A 주식회사, B에 대한 청구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나. 피고 C에 대한 청구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남인수

별지